

□ 조치요구 및 조치결과

연 번	조치요구	내 용	조 치 결 과
1	<p><세입예산 집행 철저></p> <p>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 필요</p> <p>(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p>	<p>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관되고 나면 부과징수가 매우 어려우므로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p> <p>세입규모 추계와 징수결정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점검 필요함</p>	<p>▶ 조치중(장애인복지과)</p> <p>시비 보조금 장기 미반환금 체납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토지 매각을 통한 체납금 상환을 자치구와 협의 중이며, 자치구에서는 토지건물 압류 및 공매를 통한 환수금 확보 방안을 검토 중임</p> <p>▶ 조치중(어르신복지과)</p> <p>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사용자 정보 최신화, 납부 독려 등) 및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묘지 일제조사 후 시효완료정리 대상 검토 등 체납해소 방안 강구</p>
2	<p><국고보조금 변경></p> <p>국고보조금 변경 미연에 방지</p> <p>(복지정책과)</p>	<p>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p> <p>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p>	<p>▶ 조치완료</p> <p>국고보조사업을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적정 규모가 내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미집행 최소화</p>

연 번	조치요구	내 용	조치결과
3	<p><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 전용·변경 (돌봄복지과)</p>	<p>‘23년 1월부터 서비스 전액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시키면서 이용 증가가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돌봄 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액수를 편성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p> <p>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위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집중 지원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	<p>▶ 조치완료</p> <p>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p> <p>또한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24년 서비스 이용자 적격성 판단기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사업대상 기준을 강화하였음.</p>
4	<p><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조정 반영 필요 (복지정책과)</p>	<p>‘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를 위한 논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 편성단계에서 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p>	<p>▶ 조치완료</p> <p>향후 복지재단 사업종료 결정 시 복지실 소관부서 및 복지재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게 주의하겠음</p>
5	<p><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산하기관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예산심의권 저해 (복지정책과)</p>	<p>산하기관을 활용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분석하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겠으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시에는 ‘출연금’ 으로만 편성되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p> <p>과도한 신규사업으로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향후 서울시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와 규모에 대해 관리부서인 복지정책과의 감독 강화가 필요함</p>	<p>▶ 조치완료</p> <p>현재 복지재단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예산 불용 및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지출계획 확인 후 교부하고 있으며,</p> <p>향후 복지재단 지도점검 시 부진한 사업에 대해 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관리하여 재단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겠음.</p>

연 번	조치요구	내 용	조치결과
6	<p><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p> <p>과도한 불용률 (안심소득과)</p>	<p>해당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비 편성이 지적되어 당초 예산 3억 4,62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p> <p>안심소득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 시범체계인만큼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결산 결과를 봤을 때 예산 편성시 정책토론회의 규모,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p>	<p>▶ 조치완료</p> <p>[토론회]당초 서울시 직접 주최 계획 →전문학회와 연계 개최로 예산 절감</p> <p>- 연계 개최 사유 : 경제, 사회복지 등 전문 학회와 연계하여 전문가 주목도를 높이고, 홍보비 및 토론연사 섭외 비용 등 절감 가능</p> <p>[연구자문단·소득보장정책자문단] →소규모 실행위원회 중심 운영</p> <p>- 참석수당 불용 사유: 자문 효과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실행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회의 자료 자체 제작으로 회의 비용 예산 절감</p> <p>※ '23년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4년 예산편성 시 회의운영비 및 토론회 등 예산 자체 감액 반영하였음 ('23년) 314,600천원 → ('24년) 127,100천원</p>
7	<p><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p> <p>높은 불용률 및 저조한 추진실적 (자활지원과)</p>	<p>전체적인 노숙인 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업 집행률이 낮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순 일자리 제공 건수를 늘리는 것 외에 사업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방향 개편 등도 고려해볼 측면이 있음</p>	<p>▶ 조치중</p> <p>노숙인 수의 감소 추세 및 노숙인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공공일자리 배치처 확대, 협력기관(한국철도공사 등)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일자리 연계, 희망의 인문학 교육 연계를 통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자립의지 촉진 등 민간일자리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p>